

AI혁신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26.03.23.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AI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립목적) 센터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AI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교육을 활성화하고, 대학 구성원 모두의 AID전환 역량함양을 통하여 AID전환 기반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AID전환 관련 정책 수립, 운영 및 환류
2. AID전환 교육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
3. AID전환 역량함양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4.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운영 및 지원

제2장 조직 및 업무

제4조(사업관리 전담조직) ① 센터는 전략지원처 산하에 두며,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, 사업의 기획·운영·평가를 책임진다.

③ 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원, 연구교수 등을 둘 수 있으며, 임용 및 평가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5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AID전환 관련 연구기획 및 지원
2. AID전환 기반 교육과정 및 비정규교육과정 개발·운영의 지원
3. AID전환 인프라(서버·데이터·플랫폼) 활용 자문
4. 재학생 및 교직원의 AID전환 역량 강화 지원
5. AID전환 관련 산학협력·대외협력 사업 추진 및 지원
6. AID전환 관련 교육 성과 공유 및 확산
7. AI 활용 윤리 및 창작물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
8.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3장 위원회

제6조(청강AI·DX추진위원회) ① 대학의 AID전환 전략 수립 및 정책을 결정하고, 연계된 센터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강 AID전환 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총장으로 하고 본부의 관련 부서장 및 각 스쿨별 AID전환 추진 대표교수 1인으로 구성하며, 필요시 산업계 AI 전문가 또는 외부 자문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. 사무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둔다
- ③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임기는 해당 직을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④ 각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AID전환 정책수립
 2. 센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3. 대학AID전환 사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
 4. 대학AID전환 사업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
 5.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센터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. 다만, 필요시 당연직 위원인 센터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.
-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제7조(공유)**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에 공유하여야 한다.

제4장 기타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